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8월 26일(조계숙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05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2005년 9월 6일(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조계숙 의원)

가.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2005결핵관리지침에 의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재소자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 수수료 징수 대상을 전염성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자로 선정한 자로 하며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주민등록법」상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행형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며(안 제2조),

○ 제4조의 수수료를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징수대상자 1인 1개월 기준 2,000원으로 하는 내용임(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실)

○ 동 조례안은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결핵관리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외의 재해이재민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 면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수료 징수액 감소로 인한 수수료 재활용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징수대상)수수료징수 대상은 전염성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자로 선정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주민등록법」상의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4. 「행형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수료)징수대상자 1인 1개월 기준 항결핵제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대상)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 하거나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진료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중 보건소장이 치료 대상자로 선정한 일반환자로 한다.	**제2조(징수대상)**수수료 징수대상은 전염성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자로 선정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주민등록법」상의 65세 이상인 자 3.「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4.「행형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제4조(수수료) 항결핵제의 처방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수수료)**징수대상자 1인 1개월 기준 항결핵제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생활보호법(2000. 10. 1 폐지)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이상의 노쇠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부칙<제6024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 의료보호법시행규칙(2001. 10. 9자로 의료급여법시행규칙으로 변경)

제5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의 의료급여) ①수급권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급권자의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명서를 모사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해당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2004.3.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 (수급권자)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12.30>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3. 제2호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3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2세 미만의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3.12.30]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행형법

제2조 (구분수용) ①교도소에는 만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신설 1999.12.28>

□ 2005년도 결핵관리지침(보건복지부, p 90)

7)수수료징수

나) 수수료 징수기준과 방법은 시·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기준에 의하여 INH 단독 처방이외의 모든 처방에 대하여 수수료 2,000원(1인 1개월)을 징수한다. (단 노인, 장애인, 재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